

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 2조에서 정하는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강의, 학습, 활동, 특강 등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.

② 비교과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: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학습 관련 검사, 워크숍, 멘토링, 클리닉, 특강, 학습공동체(Art-paideia) 활동 등의 프로그램
2. 진로지도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로 상담, 검사, 특강, 직무 체험 등의 프로그램
3. 심리상담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제공하는 심리검사, 개인 및 집단 상담, 특강 등의 프로그램
4.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특강, 자격증 강좌, 면접, 취업 정보 활용, 소모임 등의 프로그램
5. 교양 연계 프로그램 : 학생들의 다양한 기초 교양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
6. 전공 연계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전공 학습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
7. 사회봉사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인성함양 지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국·내외 봉사활동, 재능기부 등의 프로그램
8. 기타 프로그램 : 위 호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

제3조(편성 및 운영) ① 비교과 교육과정은 본교의 인재상 및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② 교육혁신팀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며, 세부 운영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

③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비교과 교육과정 기본정책을 수립하고,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부서 및 학과(전공)를 지원한다.

④ 비교과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부서 및 학과(전공)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
2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보고서 작성
3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
4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에 따른 개선

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성과를 분석하고 운영부서 및 학과에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)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(2021. 10. 8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